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9월 6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1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(직원의 징계)

제46조의2항(음주운전 자진신고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6조의2(음주운전 자진신고)①공사 임직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공사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.
- ②자진신고 없이 음주운전 조사 시 적발될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제49조(징계양정기준)

징계양정기준 ‘별표 7’ 및 ‘별표 8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의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에 따른 징계기준 정립
-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추가

부 칙

①(시행일)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래기획부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안전감사팀장 이 영 남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김 형 태 (390-7606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46조(직원의 징계) 사장이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“별지 제18호서식” 내지 “별지 제21호서식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	제46조(직원의 징계)<현행과 같음> 제46조의2(음주운전 자진신고제) ①공사 임직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공사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. ②자진신고 없이 음주운전 조사 시 적발될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	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징 계 양 정 기 준(현행)
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횡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(무면허 또는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)
가. 음주운전							
1) 면허정지(0.03%~0.08%미만) 1회	○						
2) 면허정지(0.03%~0.08%미만) 2회		○					
3) 면허정지(0.03%~0.08%미만) 3회			○				
4) 면허취소(0.08%이상) 1회		○					
5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		○					
6)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			○				
7) 면허취소(0.08%이상) 2회			○				
8) 면허취소(0.08%이상) 3회					○		
9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		○					
10) 음주운전 교통사고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			○				
인적피해 발생							
물적피해 발생		○					
11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					○		
인적피해 발생							
물적피해 발생			○				
12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4회	○						
13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5회		○					
14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6회			○				
15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			○				
16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					○		
17) 운전직의 운전면허 취소					○		

비고.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0>

2.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
3.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

징 계 양 정 기 준(개정안)

징 계 사 유	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	전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	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
가. 음주운전								
1)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혈중알코올 농도 0.08% 미만인 경우	○						
	혈중알코올 농도 0.08% 이상인 경우		○					
2) 음주운전 2회				○				
3) 음주운전 3회						○		
4)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		○				
5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			○					
6) 음주운전 교통사고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	인적피해 발생			○				
	물적피해 발생		○					
7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	인적피해 발생					○		
	물적피해 발생			○				
8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4회		○						
9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5회			○					
10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6회				○				
11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				○				
12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						○		

비고.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0>

2.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
3.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

도로교통법

□ 도로교통법 제44조

-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45조, 제47조,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.),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,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에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.